

존 로크의 「통치론 제2논고」와 자유민주주의 문제

백 종 현
(서울대 철학과 교수)

1. 자유민주주의 역사에서 로크 『통치론』의 의의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의 정치철학을 대표하는 그의 『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 1690)은 두 논고로 이루어져 있다. 「제1논고」(*The First Treatise of Government*)는 로버트 필머(Robert Filmer, ? -1653)의 왕권신수설(the theory of the divine right of kings)을 피력한 저술 『족장론』(*Patriarcha*, 1680)에 대한 반론이고, 「제2논고」(*The Second Treatise of Civil Government*)는 시민 통치제의 기원과 정당성 그리고 목적에 관한 원론과 통치기관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경우 및 그 경우에 시민들이 취할 수 있는 조처에 대한 소고(essay)이다.

늦어도 1681년 경에는 착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로크의 『통치론』 집필 동기가 그 자신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명예혁명(1689)의 이론적 정당화에 있든 없든, 결과적으로 그의 통치론에서 개진된 민주주의의 대의정치론은 명예혁명 이후 세계 정치문화를 선도하는 사상이었다. 로크의 정치사상은 영국의 '권리장전'(1689)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독립선언문'(1776)과 그에 이어지는 미국의 '헌법'(1787) 그리고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1789)의 정신과 그 핵심을 같이 하고 있고, 이 기본 정신이 오늘날 거의 모든 세계 각국의 인권 사상과 헌법의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로크의 통치론에서 주창된 재산권 이론이 오늘날 자본주의의 정당화 이론의 골자인 점을 헤아릴 때, 로크의 정치철학은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2. 로크 시민 통치 이론의 대강(大綱)

로크의 「시민 통치에 관한 논고」는 오늘날 민주 사회에서라면 시민들이 당연하게 받아 들이는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통치체제의 정당한 운영 원리를 계몽적으로 논설하고 있다.

국가공동체(commonwealth)의 성립 이전에 사람들은 자연상태(state of nature)에 있었으며,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연적인 권리로서 생명(life)·자유(liberty)·재산(estate)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니, 그것은 불가양도의 천부인권이다.¹⁾

그 자연상태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자유의 상태이자 평등의 상태이다. 거기에서 “사람들은 타인의 허락을 구하거나 타인의 의지에 구애 받지 않고,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일신(一身)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²⁾에 있다. 이 자연상태는 “또한 그 안에서 모든 권력과 권한이 호혜적이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지 않는 평등의 상태”³⁾이다. 자연상태의 사람들은 재산(property) 상에서 평등하며, 어떤 종류의 지배-종속 관계도 없이 만인은 그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자유의 상태인 자연상태는 그러나 무질서와 ‘방종의 상태’(state of licence)가 아니다. 거기에는 자연의 법이 있으며, “바로 이 법인 이성(이성)은 의논을 바라는 모든 인류에게, 인간은 평등하고 독립적인 존재자이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건강·자유 또는 소유물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⁴⁾

자연 안에서 태어나 자연에서 먹고 마실 것, 입을 것과 쉴 곳을 구하는 신체적 존재자로서 인간에게 자연은 삶의 공동의 터전이다. “자연적 이성은 인간이 일단 태어나면 자신의 보존을 위한 권리, 그

1) J. Locke, *The Second Treatise of Civil Government*, §§3-5 참조.

2) *op. cit.*, §4.

3) *op. cit.*, §4.

4) *op. cit.*, §6.

러니까 고기를 먹고 음료를 마시고, 여타 자연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들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일러 준다.”⁵⁾ 이런 의미에서 최초 자연상태에서 자연은 — 토지는 말할 것도 없고, 일체의 산물(産物)이 — 만인의 공동 소유물이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산출되는 모든 과실과 저절로 자라는 짐승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자연적인 상태에 남아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사적인 지배권을 가지지 않았다.”⁶⁾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일신에 대해서는(배타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바, 이에 관해서는 그 사람 자신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신체의 노동과 그의 손의 작업은 정당하게 그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자연이 제공하고 자연 안에 남겨 둔 것을 그 상태에서 옮겨 거기에 자신의 노동을 섞고 무엇인가 그 자신의 것을 합하면, 그로써 그는 그것을 자신의 소유(재산)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그에 의해서 자연이 놓아 둔 공유의 상태에서 옮겨져, 그의 노동이 부가한 무엇인가를 가지게 되며, 그 부가된 것으로 인해 그것에 대한 타인의 공동 권리가 배제된다. 왜냐하면 그 노동은 그 노동을 한 자의 의심할 바 없는 소유물이므로, 어느 누구도 아닌 그 자신 만이, 적어도 그것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공유물이 충분히 남아 있는 한, 그의 노동이 합하여진 그것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⁷⁾

세계를 인류에게 공유물로 준 신은 사람들에게 또한 “그것을 삶에 최대한 이득이 되고 편익이 되도록 이용할 이성”⁸⁾도 주었고, 따라서 사람들이 노동을 통하여 자연으로부터 최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자연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으로 그것은 자연적 이성에 부합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노동에 의해 토지를 그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인류의 공동 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

5) *op. cit.*, §25.

6) *op. cit.*, §26.

7) *op. cit.*, §27.

8) *op. cit.*, §26.

히려 증대시키는 것이다.”⁹⁾ “신은 사람들이 세계를 공유토록 준 것이지만, 그러나 신은 세계를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이익과 최대한의 편익을 위해서 주었으므로, 그것이 항상 공유로 개간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 신의 의도라고 상정할 수는 없다. 신은 세계를 근면하고 합리적인 자들이 사용하도록 준 것이다.”¹⁰⁾ 근면한 자들의 노동에 의해서 개간된 토지는 자연 그대로였던 때보다 수십배 수백배의 식품과 옷감을 제공하고 그것은 인류에게 유용한 생활 필수품을 충당한다. 그런 만큼 노동을 통하여 자연의 가치를 높인 사람이 그 이득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그 자신의 주인으로서, 곧 그의 일신과 행위와 노동의 소유주로서 인간은 그 자신 안에 소유권의 주된 원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발명과 기술을 통하여 삶의 편익을 개선했을 때, 그가 자신을 부양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의 대부분을 이루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것이며, 다른 사람과의 공유물이 아니다.”¹¹⁾ 이렇게 해서 사유 재산은 형성되는 것이며, “근면함의 상이한 정도에 따라 사람들은 상이한 비율의 재산을 가지게 되고, 화폐의 발명은 사람들에게 재산을 지속적으로[제한없이]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¹²⁾

이로써 소유의 “자격에 대한 쟁론을 벌려야 할 이유도, 노동이 부여한 소유의 크기에 대해서 의심해야 할 것도 없음”¹³⁾이 밝혀진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자연상태와 자연의 법칙이 허용하는 자연스럽고 정당한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침해하고, 그들을 부당하게 자신의 지배 하에 두려 함으로써, 사람들은 이내 전쟁상태(state of war)에 빠지게 된다.¹⁴⁾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전쟁상태를

9) *op. cit.*, §37.

10) *op. cit.*, §34.

11) *op. cit.*, §44.

12) *op. cit.*, §48.

13) *op. cit.*, §51.

14) *op. cit.*, §§16-21 참조.

해소하기 위하여 상호 협약을 맺어 공동체를 세우고, 그 협약에 스스로 종속하며, 그 협약의 원만한 준수와 새 협약의 제정을 일궈 낼 공동체 관리자를 선임하고, 부분적으로 그들이 가진 자유와 재산 등의 “자연권을 포기하고, 공동체의 수중에 양도하여, 모든 사건에서 공동체가 제정한 법에 따라 보호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한다.”¹⁵⁾ 그렇지만 이 공동체의 주체는 여전히 자발적인 상호 협약을 통해 그 공동체를 세운 당사자들이다. 사람들은 상호 협약을 통해 국가공동체를 형성하고, 스스로 그 공동체의 일원 곧 시민이 되며,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바로 국가공동체의 주인이다. 주권재민(主權在民· ‘Sovereignty rests with the people.’)의 원리는 이 사실에 근거한다.

일반 시민들이 평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 보장하고 국가공동체를 적절히 운영할 주권대리자를 선임하여 사람들은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므로, 통치자는 공공선(公益, public good)을 지키기 위해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만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그러나 자연인은 이성 자체가 아니어서 월권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입법권(legislative power)과 집행권(executive power)을 분립시켜 그 권한 행사를 상호 견제토록 해야 한다.¹⁶⁾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통치자가 국가공동체의 목적을 이탈하여 월권을 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침해할 경우 시민들은 통치자 내지 통치 형태를 자기들의 의사에 맞게 바꾸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것은 정부 내지는 통치를 해체함으로써 국가공동체의 해체 곧 소멸을 막는 길이다.

3. 로크의 대의정치제와 다수결 원칙의 문제점

인식론의 문제와 관련하여, 인간의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knowledge)은 감각 경험(experience)으로부터 출발하며 따라서 감

15) *op. cit.*, §87.

16) *op. cit.*, §88 참조.

각(sensation)은 인간의 의식(mind)과 인식 대상(real object) 사이의 매체(medium)라고 하는 경험론(empiricism)과 표상설(representative theory)의 주창자인 로크가 세운 정치 이론의 중추는 대의정치제(representative system)이다. 감각을 통해 실재 사물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런 만큼 감각이 실재 사물을 대신하고 대표할 수 있듯이,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대의원들을 통해 표현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어 일정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원들”¹⁷⁾이 합의하여 제정한 법규는 일반 시민 모두의 합의와 같은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일반 시민들 모두의 자기 약속으로서 보편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낱 물체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각기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납득해야하는 인격체들의 모임인 인간 사회에서 대의원이 과연 그를 선출해 준 시민들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고, 반영하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10만 개의 산소 분자들 묶음에서 산소 분자 1개를 골라 내면, 그 1개가 여타 것들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그런 수준에서 여타의 것들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수준에서의 대표성을 10만 명이 선출한 한 사람의 대의원에게서 기대할 수 있을까? 이것을 기대할 수 없으면, 직접 민주정의 실시가 여러 면에서 어려운 현실에서 대의정치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대의정치제의 정당성의 문제는 남는다. 그래서 이른바 ‘간접 민주 정치’는 대의정치라기보다는 적절한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의 양식(良識)과 양심(良心)에 공동체의 공사(res publica)를 위탁하는 정치 형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한다.

게다가 대의원의 선출에서나 대의원들의 모임인 의회에서의 의사 결정이 다수결로 이루어질 때, 이 제도가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개인주체 사상과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가는 숙고를 요하는 문제이다.

사람들 사이에는 현명함의 정도에 차이가 있고, 복잡한 일일수록 전문가만이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이 충분히 증언하는 바이며, 따라서 가장 좋은 공동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장 현명한

17) *op. cit.*, §154 참조.

통치 전문가를 찾아 공동체를 그의 지도 아래에 두는 것이 가장 좋다는 현자주의 철인 정치의 이상을 접어 두고,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서 사회를 구성하며, 누구나 자기에 가장 좋은 것을 정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이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사회 구성원은 권리와 자질에 있어서 누구나 평등하고 자신의 것에 대한 자유로운 행사의 권한을 가지며, 공공의 일에 똑 같은 수준의 주체로서의 발언권을 갖음을 뜻한다. 그런 공공의 일에는 정체(政體)를 정하는 일, 통치자를 선출하는 일, 대의원을 선출하는 일도 포함된다. 그런데 그런 일들에서 다행히 구성원 전원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면 그로써 사안은 종결되겠지만, 갑론을박 의견의 대립만 있을 뿐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차선책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세워 의사를 결정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다수결 원칙의 정당성은 어디서 오는가?

다수의 의견이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것은 명백히 그 의견에 반대한 소수에게도 강제력을 갖는다. 로크도 “다수는 여타 사람들을 결정하고 구속할 권리를 갖는다.”¹⁸⁾고 말한다. 당초에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 공동체를 결성하였을 때, 공동체는 한 인격 한 몸(one body)이 된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한 공동체는 구성원 사이에 만장일치가 불가능하면 “다수의 동의가 그것을 이끄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¹⁹⁾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하나의 정부 아래 하나의 정치체를 만들 것에 동의함으로써, 다수의 결정에 승복하고 구속될 의무를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다.”²⁰⁾ “만약 다수의 동의가 전체의 결정으로서 이치에 맞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고 모든 개인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오직 개개인 전원의 동의만이 어떤 것을 전체의 결정으로 만들 것이다.”²¹⁾ 그러나 건강 상의 문제 또는 업무 상의 문

18) *op. cit.*, §95.

19) *op. cit.*, §96.

20) *op. cit.*, §97.

21) *op. cit.*, §98.

제 등으로 인해 사회 구성원 전원이 어떤 사안에 관한 논의의 모임에 참석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다가, “모든 인간 집단에는 불가불 의견의 다양성과 이해의 대립이 있기 마련”²²⁾ 이어서, 설령 하나의 공동체가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다수가 여타 사람들을 구속할 수 없는 곳에서는 그들은 한 몸으로 행동할 수가 없으며, 그 결과 즉각적으로 다시금 해체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²³⁾ 이 때문에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한, 공동체의 일이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공동체의 의사가 다수결로 결정되고, 그것이 다른 의견을 가진 소수에게도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은 공동체를 한 몸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명백히 소수의 주체적 권리를 무시 침해하는 일이다. “모든 사람은 본래 자유로우며, 그 자신의 동의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그를 어떤 지상의 권력에 복종시킬 수 없다.”²⁴⁾는 것이 자유주의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이 이 자유주의 원칙에 우선할 정당성을 갖는다면, 그것은, 개개인 은 이미 공동체 결성에 참여할 때, 공동체의 유지가 무엇에도 우선한다는 것에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간주하는 것이거나, 이 두 원칙의 충돌의 중재에서 다수결 원칙의 편을 들어 주는 제 3의 원칙, 가령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을 내세우는 공리주의 원칙이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미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간 사회는 때때로 어떤 사안에 대한 다수의 결정 내용이 다수의 우대함의 타일 수도 있고, 다수의 이익만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음을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다수의 횡포’를 말하게 되고, 그것이 횡포인 한 다수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고서도 만약 ‘다수의 결정’이 ‘오직 다수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그 정당성을 내세운다면,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일신과 재산을 가장 합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유로운

22) *op. cit.*, §98 참조.

23) *op. cit.*, §98.

24) *op. cit.*, §119 참조.

결정에 의하여 국가공동체를 수립했다는 로크의 '사회계약설'은 국가공동체란 실력자의 통치권 행사에 근거한다는 '실력설'과 그 근본적 차이를 찾기가 어렵게 된다. 여타의 사람들을 압도하는 한 사람의 힘만이 패권(霸權)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사와 상관 없이 소수 위에 군림하는 다수의 힘도 패권적일 수 있는 것이다.

공동체라는 것이 진실로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자유로운 협약에 기초하는 것이라면, 공동체의 일체성(一體性)은 매우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어떤 협약이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맺어진 것일 경우, 그 협약에는 유효 기간이 있거나 아니면 참여자들에게 언제든 협약을 취소하거나 그로부터 탈퇴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공동체와 국민들 사이에는 자유로운 협약에 의한 여느 공동체와 그 구성원 사이의 관계에서는 볼 수 없는 견고성이 있다. 국민은 임의대로 국가로부터 탈퇴할 수도 없고 — 세계의 현 국가 체제에서는 어떤 사람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한 국가에서 탈퇴했다 하더라도, 그는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다른 국가에 귀속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 —, 한 국가는 일부의 국민들이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 국가를 떠나 그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것도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가에 들어간다거나 떠난다는 것은 개개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국가는 자의를 전제로 하는 계약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다”²⁵⁾는 지적도 있다. 국가공동체가 자연인들의 자유로운 협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고, 현대 국가에서 국가공동체와 국민 사이의 법적 관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가공동체가 국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자유롭게 결성되었다는 것은 국가공동체의 이상적 목표를 설득하기 위한 한 방식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국가는 국민 개개인들의 이익을 위한 협약 이상의 토대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5) G.W.F.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75, Zusatz. 참조.

국가공동체의 운영에 있어서 의사 결정이 다수결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함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수결이 구성원 전체의 결정으로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다수의 힘 이상의 어떤 것, 곧 인류의 이상이라든지 절대적 도덕성 같은 것을 동시에 수반하여야 한다.²⁶⁾

4. 로크의 저항권 이론과 헌법적 문제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압축적인 표현의 하나로 손꼽히는 미국 '독립선언문'의 한 대목은 인간의 불가침의 자연권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의 진리들을 자명한 것으로 생각한다. —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불가양도의 권리들을 부여 받았으며, 여기에는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의 권리가 포함된다. 또한 이 권리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들 사이에 정부가 수립되었고,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통치 받는 사람들의 동의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정부 형태가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언제든지 인민들은 그것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 이 원칙들 위에서 정부를 구성하고, 그들에게 안전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형태로 정부의 권한들을 조직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²⁷⁾

이 선언문의 작성자들이 로크의 통치론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는가 여부와는 상관 없이, 미합중국 독립선언문의 이 대목에는 로크 정치 사상의 골자가 모두 망라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도 국민들은, 기존의 정부가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 보장하지 못할 때, 그 정부를 개폐하고 언제든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권리를 갖는다는 이른바 '저항권' (right of resistance) 곧 시민 혁명의 사상은, 그

26) 백종현, 「개인과 인간 주체 개념의 형성」, 『哲學研究』제35집 (서울 1994), 184면 참조.

27)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of the thirteen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July 4, 1776' 참조.

위에서 세계 민주주의 역사 상 획기적인 사건들인 영국의 명예혁명(1688), 미국의 독립운동(1776), 프랑스 대혁명(1789)의 정당성이 설명될 수 있는 토대 사상이다. 이론적인 면에서도 로크의 시민 통치 이론은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정치 사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그로부터 큰 파급 효과를 거두었다.

물론 '저항권' 이론이 로크의 창안은 아니다. 이와 관련된 사상은 이미 고대 인도나 이집트의 문헌²⁸⁾에서도, 『孟子』의 여러 귀절²⁹⁾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알투스시우스(J. Althusius, 1557-1638)나 홉스(Th. Hobbes, 1588-1679)에서는 충분히 길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로크의 혁명 이론은 직간접적으로 명예혁명과 관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역사적인 근대적 시민 혁명의 효시로 간주되고, 이것을 계기로 자유민주 사회가 현실적으로 열렸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저항권'은 진실로 어떤 의미에서 시민들의 본래적인 권리이며, 오늘날의 헌법 국가 내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 국민들의 권리일까? 이 물음에 대해 로크의 저항권 이론은 어떤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

로크의 저항권 이론은, 국가공동체란 인민들이 전생상태로부터 벗어나 자신들의 평화를 유지할 목적으로 상호 협약을 맺어 자발적으로 수립한 사회라고 하는 그의 계약 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므로 인민들이 일정한 경우에 현존하는 정부를 해체하고, "그들의 원래의 자유를 회복할 권리와, 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새로운 입법부(곧,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그들이 바로 그 때문에 사회 안에 있는 그 궁극 목적인 그들 자신의 안전과 안녕을 강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³⁰⁾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인민들은 저항권을 행사, 기존의 정부를 해체할 수 있는가?

정부는 외부로부터도 해체될 수 있고, 내부로부터도 해체될 수 있

28) Annemarie Gross, *Der Streit um das Widerstandsrecht ... Beitrag zur Geschichte der englischen Revolution*, Berlin 1929, S. 1 이하 참조.

29) 특히 『孟子』, 梁惠王章句下 八, 萬章章句下 九 참조.

30) J. Locke, *op. cit.*, §222.

다. 국가사회가 외부 세력의 침략을 받아 그에 종속하게 되면, 그 국가 자체가 해체되는 것이고, 그때 기존의 정부가 해체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³¹⁾ 그러나 국가사회의 해체 없이도 국민들의 저항에 의해 정부는 해체될 수 있으니,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다.

첫째는, 입법부가 변질되는 경우이다.

“입법부를 세우는 일이야말로 사회의 최초의 기본적인 행위이다.”³²⁾ “국민들의 동의와 임명을 통해”³³⁾ 입법부만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준수해야 할 법률을 제정할 권위를 갖는다. 이로써 입법부는 “국가사회에 그 형태, 생명 그리고 통일성을 부여하는 영혼”³⁴⁾이다. 그 때문에 입법부의 훼손이나 파괴는 곧 정부의 해체를 낳는다.

그런데 입법부의 변질은, (1) 통치자가 “입법부가 선언한, 사회의 의지인 법률을 그의 자의적인 의지로 대체할 경우”³⁵⁾, 또는 (2) 군림하는 자가 “제 때에 입법부가 집회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입법부가 설립된 목적에 의거해 활동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³⁶⁾, 또는 (3) 통치자의 자의적인 권력에 의해 “국민들의 동의 없이 국민들의 공동 이익에 반해 선거인단이나 선거 방법이 변경될 경우”³⁷⁾, 또는 통치자나 입법부가 “국민들을 외국 세력의 예속으로 넘기기”³⁸⁾로 결정할 경우에 일어난다. 입법부가 이런 경우처럼 그 본질에서 변경될 경우에, 인민들은 “자신들을 위해 그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입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인민들은 권한 없이 그들에게 무엇이든 강요하는 자들에게 저항할 충분한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³⁹⁾ 그리고 이때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한다는 것은 곧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1) *op. cit.*, §211 참조.

32) *op. cit.*, §212.

33) *op. cit.*, §212.

34) *op. cit.*, §212.

35) *op. cit.*, §214.

36) *op. cit.*, §215.

37) *op. cit.*, §216.

38) *op. cit.*, §217.

39) *op. cit.*, §212.

둘째로, “최고 집행권을 가진 자가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고 방기함으로써 이미 제정된 법률이 더 이상 집행될 수 없을 때”⁴⁰⁾ 그 정부는 해체될 수 있다. 왜냐하면 “법률이 집행될 수 없는 곳은 법률이 없는 곳과 똑 같기”⁴¹⁾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는 다시금 전쟁상태에 빠질 터이므로, 이 경우 인민들은 사회 설립 이전의 본래의 권리를 되찾아 “새로운 입법부를 창립하여 자신들을 위한 대비를 할 자유로운 처지에 놓인다.”⁴²⁾ “왜냐하면 사회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과오로 인해서는 결코 그것이 자신의 보존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원래의 권리를 상실할 수 없기 때문이다.”⁴³⁾

셋째로, 입법부나 통치자가 “그들에 대한 신탁(信託)에 반하여”⁴⁴⁾ 행동할 때, 정부는 해체될 수 있다. 만약 입법부가 “국민들의 생명·자유·재산에 대한 절대적 권력을 자신의 수중에 장악하거나 아니면 제3자의 손에 넘기기를 기도한다”⁴⁵⁾면, 그것은 국민들이 그들이 가진 자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위탁한 권한을 오용하는 것이다. 또한 통치자가 대의원을 매수한다거나 자기 자신의 횡책에 끌어 들이는 등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국가의 재물이나 관직을 자기의 자의적인 의도에 맞춰 사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탁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들에서 입법부나 통치자는 스스로 국가사회의 기본법을 해치고, 사회를 전쟁상태로, 권위 없는 폭력이 자행되는 무법 상태로 몰고 간 것이다. 이때 국민들은 국가 권력에 대해 더 이상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그 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완전한 권리를 환수할 수 있다.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정부 해체의 책임은 궁극적으로는 국가 권력의 최고 집행권을 가진 자에게 있다. 왜냐하면 그가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권력과 자산 그리고 관직들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40) *op. cit.*, §219.

41) *op. cit.*, §219.

42) *op. cit.*, §220.

43) *op. cit.*, §220.

44) *op. cit.*, §221.

45) *op. cit.*, §222.

때문에 국민 저항의 궁극적인 대상은 최고 집행권을 행사하는 자이다. 통치자가 국가의 법률적 권위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외국인이나 불한당이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과 똑 같은 것으로, 국민들이 그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다.⁴⁶⁾ 그러나 문제는 이 경우 국민들의 저항권 행사의 적법성 여부를 누가 판정할 수 있는냐이다.

통치자가 국민들이 위탁한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월권하고 있는지를 누가 판정할 수 있을까? 그에게 맡긴 일을 그가 과연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가장 잘 가릴 수 있는 자는 그에게 일을 맡긴 국민들이라고 로크는 생각한다.⁴⁷⁾ 물론 통치자의 월권적 행위를 소수의 국민들이 탄핵하고자 할 때, 그 판결은 다수의 국민들이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은 통치자를 탄핵하고자 하고 통치자는 그런 국민들의 의사를 위세로써 제압하고자 할 때, 이때 양자 중 어느 쪽에 정당성이 있는가는 누가 판정할 수 있는가? 통치자와 국민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얽혀 있는 사건의 당사자로서 재판관이 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처럼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판정할 재판소가 지상에는 없는 경우에는 하늘에 있는 신이 재판관이다”⁴⁸⁾고 로크는 말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당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자는 신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역사·사회적으로 볼 때나 헌법 원리 상으로 볼 때나, 입헌 국가에서 헌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공권력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저항하는 경우는 정당화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심지어 독일의 몇몇 주(州)의 헌법이나 연방 헌법은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고, 분쟁시 구제 기관으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있다. 예컨대 헤센(Hessen) 주 헌법은 “헌법에 위배되게 행사되는 공권력에 대한 저항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의무이다.”⁴⁹⁾고 규

46) *op. cit.*, §§231-239 참조.

47) *op. cit.*, §240 참조.

48) *op. cit.*, §241.

정하고, 브레멘(Bremen)의 헌법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제권리가 헌법에 어긋나게 공권력에 의해 침해될 경우에”⁵⁰⁾ 시민들의 저항을 허용한다. 독일 연방 헌법 제20조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국체(國體)와 정체(政體) 그리고 주권재민의 원칙을 규정한 후에 제 4 항에서 “이 질서를 폐기하려고 기도하는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모든 독일인은, 다른 구제 수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저항의 권리를 갖는다.”⁵¹⁾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처럼 헌법 자체의 수호를 위해, 헌법에 어긋나는 통치 행위가 있을 때 그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을 명문화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을 경우, 저항권 행사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권리의 행사 수준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시민혁명적 사태에서 보듯, 통치자가 국민들의 저항권 행사를 무력으로 막거나, 또는 정복자가 괴뢰 정부를 이끌기 위해서나 무법적 독재자가 적법성을 가장하기 위해서 제정한 헌법 체제에서처럼, 이미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권력이 행사될 때, 이에 대한 저항은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때 이 저항이 정당한가 여부는 신만이 판정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성공한 저항은 정당성을 얻지만, 실패한 저항은 국가 내란의 죄나 반란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뜻 이외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 저항권의 헌법 규정은 선언적 의미를 가질 따름이다. 저항권은 그 ‘정당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불법적’ 공권력에 대해 행사될 수도 있지만, ‘부당한’ 그 헌법 자체의 폐기를 위해 ‘적법한’ 공권력에 대해 행사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항권’ 그것이 인민들의 권리라면, 그것은 헌법 규정을 넘어서는 천부인권이라 해야 할 것이다. 어떤 헌법 내에 국민들의 저항권에 대한 명문 규정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용기 있는 국민은 불가피할 경우

49) Hessische Verfassung vom 1. Dez. 1946, Art. 147, Abs. 1.

50) Bremer Verfassung vom 21. Okt. 1947, Art. 19 참조.

51)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vom 24. Juni 1968, Art. 20, Abs. IV 참조.

저항을 할 것이고, 그리하여 성공하면 그 저항은 정당성을 얻을 것이니 말이다. 그럼에도 헌법 내에 저항권 규정을 둔다는 것은 주권재민의 원칙을 강조 재천명하는 뜻이 있다고 볼 수 있다.

5. 로크의 자유민주주의 이론과 현대 국가 운영의 이상

로크의 정치 사상은 분명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토대 사상을 이룬다. 그것은 우리가 현대 국가의 기틀을 생각할 때도 그의 자연권 사상이나 사회계약설 그리고 노동에 의한 소유의 권리 이론을 떠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대 국가의 운영에서는 로크적 전제만으로써는 충분히 해명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들이 부상되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연적으로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모두 평등하다고들 말하지만, 과연 실제로 그러한가? 실제로 그러하다면, 사람들은 무슨 뜻에서 무엇에서 평등한가?

물론 사람은 누구나 목숨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평등하다. 그러나 천부적인 능력은 각양각색이며 — 한 예로 천재도 있고 천치도 있다. — 선천적 요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체격과 미모에서도 큰 차이가 있고, 같은 수준의 소양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 그것을 개발 발전 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성장 환경도 천차만별이다. — 남자로 태어난 사람 · 여자로 태어난 사람,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도회지에서 자라는 사람 · 산간벽촌에서 자라는 사람,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 · 가정조차 없는 사람, 교양 있는 부모를 가진 사람 · 무지막지한 부모 밑에 있는 사람 …… 각기 그 생활 배경과 여건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등은 '무엇의' 평등인가? 체력의 평등인가, 재산의 평등인가, 권력의 평등인가?

'권리에 있어서 만인은 평등하다'고 흔히 말하지만, 이 말이 단지 선언적 성격의 것이라면 몰라도, 실현되어야 할 권리를 지시한다면, 권리의 실현이 아무 조건 없이 되는 것인가?

누구에게나 똑 같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장만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이 자유권이 무슨 소용이 되겠는가? 누구에게나 똑 같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지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장님에다 두 팔이 없는 사람에게 그 자유의 권리는 무엇을 뜻하겠는가?

‘법률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이유로, 부지런히 일했지만 그래도 자식의 위험한 질병 치료를 위한 비용이 없어 도둑질한 사람과 3대에 걸쳐 낭비적 생활을 해도 오히려 남을 재산을 가진 자가 더 큰 부를 쌓기 위해 도둑질을 했을 경우, 그것을 ‘공평하게’ 단죄한다면, 이때 ‘평등’이란 무슨 뜻인가? ‘기회 균등’이란 이유로, 신체 건강한 청년과 외다리 청년을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 100m 경주를 시켜 앞선 자를 포상한다면, 이때 ‘평등’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날 현실 국가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다지 평등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태어날 때는 누구나 평등하다거나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평등은 유지된다는 말은 사태에 맞지 않다. 그럼에도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말이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현시켜야 할 이상임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위(人爲)적인 노력, 제도적인 뒷받침으로만 달성될 수 있는 인간의 인간다운 행위의 목표이다. 그리고 이 이상 실현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동참한다고 해도, 이미 자연적인 여건, 사회적인 환경이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평등인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는다.

근면하고 창조적인 노동을 통해 자연물 이상의 재화가 생산되고 그것이 사유 재산의 기초로서, 이로부터 생기는 빈부의 차이는 불가피하고 정당하다는 주장이, 누구에게나 적당한 일터가 널려 있고,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해 낼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는 ‘평등’의 조건 아래에서라면 몰라도, 현대 국가사회에서처럼 이미 일터 선택에 많은 제약이 있고, 일할 능력도 똑 같지 않은 곳에서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까?

자기 노고에 의해서만 자기 소유를 증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 근본에서는 타당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한 생산 경쟁이 사회 전체

를 더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인류의 오랜 역사가 이미 입증하는 바이지만, 그러나 이미 사람들 사이의 경쟁 조건이 다르고, 노동에 의한 부의 창출보다 기존의 부에 의해 증대되는 새로운 부가 더 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의 가난을 그의 무노동과 나태함 탓으로만 돌릴 수 있겠는가?

적절한 자유 경쟁 분위기를 이끌어 사회가 활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팔이 긴 사람에게는 짧은 칼을, 팔이 짧은 사람에게는 긴 칼을 제공하여 경쟁 조건을 맞춰 주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도 경쟁 사회가 '경쟁적'으로 창출한 생산물을 인간답게 향유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오늘날 국가의 첫 번째 책무이다. 헐벗은 자의 상황을 '제 탓'으로만 돌린다면, 국가는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로크조차도 인정했듯이⁵²⁾, '인민의 복지가 최고의 법'(salus populi suprema lex)⁵³⁾이라 하지 않았던가. 인민 가운데는 유능한 사람도 있고, 무력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데에는 제 탓도 있지만, 남의 탓도 있고, 사회 탓도 있으며, 자연 탓도 있다. 국가는 그 사정을 살펴 전 인민의 복지를 고루 돌보아야 한다.

자유로운 상황에서 전쟁상태 곧 불법천지를 방지하기 위해 인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로 자신들의 일신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어 국가사회를 성립 시켰다는 가설은 역사적 사실의 뒷받침을 받기는 어렵다. 역사적 사실은 오히려 옛적 왕정 시대에는 한 사람만이 자유로왔고, 다음의 신분제 귀족정치 시대에는 몇 사람이 자유로왔다가, 헌법 국가에 와서 비로소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됐다는 자유 확대의 역사관⁵⁴⁾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모든 시민들의 자유의 권리는 통치자나 통치 계급에 대한 투쟁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천부적인 것이라는 생각에 동조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관계를 늑대들 사이의 투쟁 관계로 보기보다는 상호 공존을 위한 협력의 관계로 보면서 자유권의 '사실성'(事實性) 즉 '자명

52) Locke, *op. cit.*, §158 참조.

53) Cicero, *De legibus*, III, 3, 8 참조.

54) G. W. F. Hegel, *Vorlesung über die Philosophie der Geschichte*, S. 32 참조.

성(自明性)을 강조하려는 뜻이 앞선 것이다.

오늘날 자유민주 국가에서 자유란 전체 국민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뜻한다.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없이도 자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단지 자연 법칙의 테두리 내에서 자신의 일신과 재산을 자기의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미 한 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개인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정도로 주장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동시대의 사람과 부근에 있는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즉,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나의 자유 행사'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다. 어느 사람의 어떤 행위도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필경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내가 뛰어난 의술이 있다하여 마음껏 인근의 모든 환자들을 치료한다면, 다른 의사들은 환자 돌볼 기회를 잃고 그래서 더 나은 의술을 연마할 길조차도 걸을 수 없게 된다. 내가 내 돈이라 하여 웃돈을 얻어 주고 온 동네의 사과를 모두 사들이면, 한 발 늦게 가게에 들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의 사과도 구할 수 없게 된다.

개인의 자유를 가능한 한 최대한 신장해야 한다는 이념이 지향하는 것은 모든 개개인의 자유 향유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겠지만, 사회적 조정 없이 자유 확대를 개개인의 역량에 맡겨 둘 때 그 결과는, 몇 사람의 거의 무제한적인 자유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종속 상태가 된다. 그것은 앞서 말한 바대로 개인의 역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큰 차이의 불평등한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면, 개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사회 제도적 관여는 불가피하다. 다시 말하면, 평등 이념의 실현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자유 이념의 희생 내지는 포기를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사회의 이상인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의 구현'은 자유 이념과 평등 이념의 긴장 관계를 조정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 긴장 관계의 완화 내지 해소는 사회 구성원 사이의 이웃 사랑, 형제애, 우애(友愛)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미약한 사람의 자유 보호를 위해서는 내 역량을 절제하고 내 자유를 조

급 유보하는 자세와 누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향유하고 있더라도 그의 노고 덕택에 이만한 정도의 내 삶의 질이 있는 이상, 나는 나대로 내 형편에 자족(自足)하는 자세 — 형제처럼, 친구처럼 온 시민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공화(共和)의 정신만이 자유민주 사회의 와해를 막을 수 있다. 그러므로 로크의 자유민주 사회의 이념은 공화국 정신의 보완을 통해서만 그 참 뜻을 유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J.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 (with A Supplement *Patriarcha* by R. Filmer), ed. by Th. I. Cook, New York 1947.
- G. W. F.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in: *Theorie Werkausgabe* [TW], ed. E. Moldenhauer/K. M. Michel, Bd. 7, Frankfurt/M. 1970.
- _____, *Vorlesungen über die Philosophie der Geschichte*, in: TW Bd. 12, Frankfurt/M. 1970.
-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of the thirteen united States of America].
- Hessische Verfassung Bremer Verfassung.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孟子』.
- A. Gross, *Der Streit um das Widerstandsrecht — Beitrag zur Geschichte der englischen Revolution*, Berlin 1929.
- 백종현, 「개인과 인간 주체 개념의 형성」, 수록: 『哲學研究』 제35집, 철학연구회편, 서울 1994.